

IR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4. 1. 18.

제2차 개정 2025. 7. 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IR센터(Institutional Research Center, 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데이터 기반 대학의 성과관리 정책연구 및 데이터 분석·관리에 관한 사항
2. 중장기발전계획 성과지표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
4. **핵심역량, 전공능력 진단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7.2.)**
5.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1.8.)
6. 행정부서, 학과 등 성과관리 분석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1.8.)
7. 대학평가 관련 데이터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,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연구원 중에서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(직원 등) ① 센터에는 직원, 연구전임교원, 전임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에 두는 연구전임교원, 전임연구원 및 조교의 자격과 임용 절차는 본교의 임용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IR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교무연구처장, 기획처장, **AI융합교육혁신원장**, 학술정보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 (개정 2025.7.2.)

③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 성과관리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-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성과활용) ① 센터는 대학성과의 분석결과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교의 관계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데이터 기반의 대학성과를 대학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03, 2024.01.18.)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85, 2025.01.08.)

이 규정은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468, 2025.07.0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 지침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지침, 내규 등은 제규정기본규정 제7조1항에 따라 각 업무소관부서장이 개정한다.